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3년 6월 7일

신한 BNPP 봉쥬르 유럽배당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A1, A-e, C-e, C-l, C-w 수익증권 추가
- 2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변경
- 2 법시행령 개정(2012.6.29) 사항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3 법 개정(2011.8.4) 사항 반영 (수시공시)
- 5 투자대상 정의 정정
- 6 최근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7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8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종류 A1, A-e, C-e, C-i, C-w 수익증권 추가 :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신설) (신설) 종류 C1~C5 (생략)</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 A1수익증권 : 투자자격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00% 이내 판매회사보수 : 0.6500% (판매회사 보수 외 보수 현행과 같음) 종류 A-e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선취판매수수료 : 설정일~2013.12.31. 납입금액의 0.6% 이내, 2014.01.01. 이후 납입금액의 0.5% 이내 판매회사보수 : 설정일~2013.12.31. 0.390%, 2014.01.01. 이후 0.325% 종류 C1~C5 (현행과 같음)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판매회사보수 : 설정일~2013.12.31. 0.6%, 2014.01.01. 이후 0.5% 종류 C-i 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판매회사보수 : 0.0300%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판매회사보수 : 0.0000% 종류 A-u2 (현행과 같음) (이하 관련 내용에 공통 적용)</p>
<p>2.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의 변경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환매수수료 (신설) 종류 C1, C2, C3, C4, C5 수익증권 180일 미만 : 이익금의 50% 종류 A-u2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환매수수료 종류 A1, A-e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10% 종류 C1, C2, C3, C4, C5, C-e, C-i, C-w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종류 A-u2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이하 관련 내용에 공통 적용)</p>

<p>3. 법 시행령 개정(2012.6.29) 사항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4. 법 개정(2011.8.4) 사항 반영 (수시공시)</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생략) (2) 수시 공시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현행과 같음) (2) 수시 공시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p>
<p>5. 최근 결산에 따른 정기경신: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경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p>
<p>5. 최근 결산에 따른 정기경신 :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p>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p>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현황경신 (기준일: 직전 회계연도 및 2013년 4월 30일)</p>
<p>6. 투자대상 정의 정정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채권 :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집합투자증권 등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집합투자증권 등에는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 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채권 :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집합투자증권 등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집합투자증권 등에는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 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7.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①책임투자운용인력</p>	<p>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경신 (기준일: 2013년 4월 30일)</p>
<p>8.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경신 (기준일: 2013년 4월 30일)</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A1, A-e, C-e, C-I, C-w 수익증권 추가
- 2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변경
- 3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종류 A1, A-e, C-e, C-I, C-w 수익증권 추가 :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신설) (신설) 종류 C1~C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종류 A-u2(생략)</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종류 A1수익증권 : 투자자격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00% 이내 판매회사보수 : 0.6500% (판매회사 보수 외 보수 현행과 같음) 종류 A-e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선취판매수수료 : 설정일~2013.12.31. 납입금액의 0.6% 이내, 2014.01.01. 이후 납입금액의 0.5% 이내 판매회사보수 : 설정일~2013.12.31. 0.390%, 2014.01.01. 이후 0.325% 종류 C1~C5 (현행과 같음)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판매회사보수 : 설정일~2013.12.31. 0.6%, 2014.01.01. 이후 0.5% 종류 C-i 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판매회사보수 : 0.0300%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판매회사보수 : 0.0000% 종류 A-u2 (현행과 같음) (이하 관련 내용에 공통 적용)</p>
<p>2.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변경</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환매수수료 (신설) 종류 C1, C2, C3, C4, C5 수익증권 180일 미만 : 이익금의 50% 종류 A-u2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 A1, A-e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10% 종류 C1, C2, C3, C4, C5, C-e, C-i, C-w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종류 A-u2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이하 관련 내용에 공통 적용)</p>
<p>3.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1부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p>	<p>제1부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p>	<p>제1부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 2013년 04월 30일)</p>
<p>3.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최근현황갱신 (직전회계연도 기준)</p>
<p>3.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3부 요약 재무정보</p>	<p>제3부 요약 재무정보 통합 대차대조표 및 통합 손익계산서</p>	<p>제3부 요약 재무정보 최근현황갱신 (직전회계연도 기준)</p>
<p>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제1부 5. 투자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p>	<p>제1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투자운용인력</p>	<p>제1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 2013년 04월 30일)</p>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A1, A-e, C-e, C-i, C-w수익증권 추가
- 2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변경
- 3 법시행령 개정(2012.6.29) 사항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4 법 개정(2011.8.4) 사항 반영 (수시공시)
- 5 투자대상 정의 정정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종류 A1, A-e, C-e, C-i, C-w 수익증권 추가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① ~ ② <생략></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신설)</p> <p>(신설)</p> <p>종류 C1수익증권 종류 C2수익증권 종류 C3수익증권 종류 C4수익증권 종류 C5수익증권</p> <p>(신설)</p> <p>(신설)</p> <p>종류 A-u2수익증권</p>	<p>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종류 A1수익증권 투자자격 제한없음 종류A-e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p> <p>종류 C1수익증권 종류 C2수익증권 종류 C3수익증권 종류 C4수익증권 종류 C5수익증권</p> <p>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p> <p>종류 C-i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p> <p>종류 C-w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일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p> <p>종류 A-u2수익증권</p>
<p>1. 종류 A1, A-e, C-e, C-i, C-w 수익증권 추가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종류 C1수익증권 종류 C2수익증권 종류 C3수익증권 종류 C4수익증권 종류 C5수익증권</p> <p>(신설) (신설)</p> <p>종류 A-u2수익증권</p> <p>②~⑤ <생략></p>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종류 A1수익증권 종류A-e수익증권 종류 C1수익증권 종류 C2수익증권 종류 C3수익증권 종류 C4수익증권 종류 C5수익증권</p> <p>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i수익증권 종류 C-w수익증권</p> <p>종류 A-u2수익증권</p> <p>②~⑤ <현행과 같음></p>

<p>1. 종류 A1, A-e, C-e, C-i, C-w 수익증권 추가 : 제39조(보수)</p>	<p>제39조 (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신설) (신설)</p> <p>1. ~ 5. <생략> (신설)</p> <p>(신설)</p> <p>(신설)</p> <p>6. 종류 A-u2 수익증권 <이하 생략></p>	<p>제39조 (보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1. 종류 A1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0]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6.50]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0]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2. 종류 A-e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0] B. 판매회사보수율 : 해당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율은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한다. 설정일~2013.12.31. 연 1,000분의 [3.90] 2014.01.01. 이후 연 1,000분의 [3.25]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0]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3. ~ 7. <현행과 같음> 8. 종류 C-e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0] B. 판매회사보수율 : 해당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보수율은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한다. 설정일~2013.12.31. 연 1,000분의 [6.00] 2014.01.01. 이후 연 1,000분의 [5.00]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0]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9. 종류 C-i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0]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0]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10. 종류 C-w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0]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0] 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p> <p>11. 종류 A-u2 수익증권 <이하 현행과 같음></p>
<p>1. 종류 C-i수익증권 및 종류 C-w 수익증권 추가 : 제40조(판매수수료)</p>	<p>제40조 (판매수수료) ①~②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신설) 1. 종류 A-u2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98 이내</p> <p>2.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 없음</p> <p>④ <생략></p>	<p>제40조 (판매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p> <p>1. 종류 A1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1.0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되며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설정일~2013.12.31. 납입금액의 100분의 [0.60] 이내 2014.01.01. 이후 납입금액의 100분의 [0.50] 이내</p> <p>2.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 없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종류 C-i수익증권 및 종류 C-w 수익증권 추가 : 제41조(환매수수료)</p>	<p>제41조 (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신설) : 180일미만 : 이익금의 50%</p> <p>2. 종류 A-u2 수익증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③ <생략></p>	<p>제41조 (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1 수익증권, 종류 A-e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10% 2.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B.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p> <p>3. 종류 A-u2 수익증권 A.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p> <p>③ <현행과 같음></p>

<p>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②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p>	<p>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 ⑨ <생략></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 ⑨ <현행과 같음></p>
<p>3. 투자대상 정의 정정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p>	<p>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5.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이하 "주식및채권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축소만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이하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이라 한다) 7. 금리스왑거래 8.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11. <생략></p>	<p>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5.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이하 "주식및채권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축소만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이하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이라 한다) 7. 금리스왑거래 8.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11. <현행과 같음></p>